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김용석(도봉) 의원 외 34명
- 나. 의안번호 : 제1373호
- 다. 제출일자 : 2016. 8. 16.
- 라. 회부일자 : 2016. 8. 16.

2. 제안사유

서울시는 택시이용객이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택시요금을 결제할 경우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택시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촉진하고 있으나, 현행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이 특별한 근거없이 정액(1만원 이하)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개선해 카드수수료 지원기준을 합리화하고, 2년의 존속기한을 삭제해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

3. 주요내용

- 가. 카드 수수료 지원기준을 정률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 나. 2017년까지로 제한되어 시행중인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기간 한시조항을 삭제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6. 8.24 ~ 31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원안 동의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을 '1만원 이하'에서 '기본

요금 3배 이하'로 변경하고, 부칙의 한시적 지원기간을 삭제함으로써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택시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촉진코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경과 및 현황

- 동 조례는 2011년 12월 29일 제정되어 당초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했으나, 2013년¹⁾과 2015년²⁾ 각각 지원기간을 2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와 같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
- 서울시는 6천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 보조금으로 '12년 62억원, '13년 77억원, '14년 79억원, '15년 79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9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결제 및 수수료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카드결제율	44.7 %	50.3 %	58.8 %	59.2 %	60.23%
카드결제 금액	11,310	13,643	16,272	19,491	20,772
택시전체수입(추정)	25,302	26,963	27,674	32,896	34,465
수수료 보조금 지원 금액(시비)	미지원	62	77	79	79
지원 기준	미지원	6천원 이하 결제금액	6천원 이하 결제금액	6천원 이하 결제금액	6천원 이하 결제금액

- 한편, 경기·인천·부산·대전은 조례로, 대구·광주·울산은 방침을 통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부산시는 조례상 2017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현황(2016.7월 현재)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택시대수	72,096	36,870	14,393	25,046	16,965	8,821	8,209	5,782
지원금액	91억원	58억원 도비(15억) 시비(33억)	26억원	33억원	25억원	23억원	10억원	7억원
카드결제율	64%	50%	50%	30%	12%	50%	-	50%
지원근거	조례	조례	조례	조례	방침	조례	방침	방침
일몰적용	2017년	-	-	2017년	-	-	-	-

1) 2013.10.4. 일부개정·시행
2) 2015.10.8. 일부개정·시행

■ 당초 투자심사 및 택시요금 인상분 포함 관련

-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기간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지원할 경우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택시이용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임
- 다만, 서울시가 2012년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시행한 투자심사 결과³⁾ 동 사업에 대해 ‘향후 직접적인 보조 보다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제도적 대안을 모색·추진할 것’이라는 ‘조건부 추진’ 의견을 받았으며, 2013년 10월 12일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요금 인상분에 카드결제 수수료가 이미 포함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한시적 지원기간 삭제는 직접적인 보조를 지양하라는 투자심사 결과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 이후 중복 지원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 또한 현행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을 ‘1만원 이하’에서 ‘기본요금 3배 이하’로 변경하는 안의 경우 서울시가 동 조례가 제정된 후 줄곧 6천원 이하의 택시요금 결제금액에 대해서만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 변경의 효과를 기대하기에 어려우며, 택시 기본요금 인상시 지원기준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택시요금 카드결제율 및 카드결제 금액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카드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택시요금 인상시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현실적 반영 및 동 조례 폐지 등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변화 추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선불교통카드	2.4%	2.1% (7월)	1.9% (8월)	1.5% (7월)	1.5%	1.5%	1.5%
신용카드	2.4%	2.4%	2.1% (7월)	1.9% (7월)	1.7% (12월)	1.7%	1.7%

- 한편, 서울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동의’ 의견⁵⁾을 제출하였음

3) 2012.9월 투자심사 결과보고 : 재정담당관-11232(2012.10.8)

4) 카드결제 수수료 : 대당 285,809원/년(794원/대/일)

5) 택시물류과-24807(2016.8.25.)